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467
----------	-------

발의연월일 : 2025. 8. 28.

발 의 자 : 천준호 · 문진석 · 이성윤
조계원 · 박은정 · 박정현
박용갑 · 서미화 · 박상혁
백승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어 조합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본문 중 “동의를 토지등소유자”를 “동의(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의 동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소유자가 제13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을 위한 동의를 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입안의 제안을 위한 동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① · ② (생략)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3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동의(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토지등소유자----- ----- ----- ----- -----. ----- ----- -----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